# 동아리 연합회 회칙

# 제01장 총칙

제01조 (명칭) 본회는 세종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015.03.20. 개정)

#### 제02조 (지위 및 위치)

1)지위: 본회는 세종대학교 모든 동아리의 대표기구이다.

2)위치: 본회는 세종대학교 학생회관 내에 둔다. (2014.03.27 개정)

#### 제03조 (목적)

- 1) 본회는 올바른 공동체 문화 . 대학문화 창달의 담당자인 모든 동아리인의 역량을 결집 하여 자율적인 학생자치화활동과 학원의 민주화 및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시켜 나감을 그목적으로 한다.
- 2) 본회는 전 동아리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며, 진보적 대학문화와 민족문화 . 저항문화의 창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04조 (활동원칙)

- 1) 본회는 직접 민주주의 실천의 조직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한다.
- 2) 본회는 모든 동아리인의 자율적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며 모든 동아리의 실천적 문제를 행동통일의 원칙하에 실현해 나간다.
- 3)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을 한다.

#### 제05조 (회원 자격)

- 1) 본회의 회원은 세종대학교 재학중인자로서 본회에 등록된 모든 동아리인으로 한다.
- 2) 신규 동아리로 본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동아리는 가인준, 정인준 각각 1년씩 후보기간을 갖는다.(2017.3.7 개정)

#### 제06조 (권리와 의무)

- 1)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2)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각 동아리는 해당 동아리 회칙에 근거하여 해당 동아리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2016.3.17. 개정)
- 3) 회원은 본회와 회원에 자치적 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저항하고 본 회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4) 회원은 본회에서 결정난 사항에 대한 행동통일의 의무를 가지며 비판의 권리를 동시에 갖는다.
- 5) 신규 동아리로 등록원서를 제출한 동아리는 중앙동아리가 되기 전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의무만 갖는다. (2018.3.8. 개정)

#### 제07조 (조직)

- 1)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결기구로 동연 총회, 대표자 회의, 분과장 회의, 분과회의, 집행부를 둔다.
- 2) 본회는 집행부로 기획국, 홍보국, 사무국, 집행국, 소통국, 문화국을 둔다. (2015.03.20. 개정)
- 3) 필요성에 따라 집행부를 개편 혹은 통·폐합할 수 있다.(2014.03.27 개정)

#### 제08조(사업)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2014.03.27 개정)

- 1) '동아리 자활'을 위한 활동
- 2) '동아리 간 유대'를 위한 사업
- 3) '동아리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 4)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
- 5) 기타 동아리 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 제02장 동아리연합회총회

#### 제09조 (지위)

1) 동아리연합회총회(이하 동연총회)는 본회의 최고 결정기구이다.

#### 제10조 (구성)

- 1) 동연총회는 본회의 회원전체로 구성한다.
- 2)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대한 참석권을 갖는다.
- 3) 동연총회의 성회 요건은 본회 회원 100인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 제11조 (의장)

1) 총회의 의장은 동연회장이 맡는다. 단, 동연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대행한다.

#### 제12조 (소집)

- 1) 동연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둔다.
- 2) 정기총회는 매 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 매 학기말 종료 30일전에 의장이 소집한다.
- 3) 임시총회는 대표자회의, 회원 30인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7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의장의 명의로 소집한다.
- 4) 동연총회소집은 소집 요구일로부터 3일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며 공고하여야 한다. 단, 3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3조 (권한)

- 1) 동연총회는 본회의 회원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 2) 동연총회는 본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사항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의결한다.
- 3) 동연총회는 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 동연회장, 부회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확정권을 갖는다.(단, 가인준 동아리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 4) 동연총회는 예산 심의 . 확정권을 갖는다.
- 5) 동연총회는 개정회칙 의결권을 갖는다.
- 6) 동연총회의 의결은 본회 회원 100인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 (정족수)

- 1) 동연총회는 의안의 내용에 관계없이 본회 회원 100인 이상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1차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다수 득표로 한다.
- 2) 의사정족수는 회의 도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회의를 나가는 경우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2018.3.8. 개정)
- 3) 특별히 규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안건 규정에 준하여 의결한다.

### 제03장 동아리대표자회의

#### 제15조 (지위 및 구성)

- 1)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본회의 최고 심의·의결 기구이다.
- 2) 본회의 회장단, 집행부, 각 동아리 대표자로 구성된다.
- 3) 각 동아리 대표자는 각 동아리의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된 회장으로 하며 회장 불참시에는 대리인이 그 자격을 대신한다. (2018.3.8. 개정)
- 4) 본 회의 정식 등록된 동아리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참석이 가능하나. 중앙 동아리의 장 혹은 그 대리인 이외에는 발언권은 가지지 못한다.
- 5) 3항을 위한 내용은 공결 사유에 따른다 (2017.3.7. 개정)

#### 제16조 (의장)

1) 대표자회의 의장은 동연회장이 맡는다. 단,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맡는다.

#### 제17조 (소집)

- 1) 대표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2) 대표자 회의의 정기회의는 학기중 매월1회씩이다. (2016.3.17. 개정)
- 3) 임시회의는 본회에 정식 등록된 동아리 대표자 1/4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본회의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본회의 집행부 회의를 통하여 소집할 수 있다.
- 4)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7일 이전에 이를 공고한다.(단,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본회의 집행부 회의를 통하여 3일 이전에 이를 공고한다.)
- 5) 17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①동아리 연합회장 발의
  - ②집행부 의결에 의한 발의
  - ③분과위원회 의결에 의한 발의
  - ④대표자회의 재적 1/2 이상의 동의 (2016.3.17. 개정)

#### 제18조 (업무 및 권한)

- 1) 본회의 회칙개정 심의 . 발의권
- 2) 본회의 사업계획 심의 . 의결권
- 3) 본회의 예산 . 결산 심의 및 의결권
- 4) 준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의결권
- 5) 등록회비 심의 . 결정권
- 6) 동연집행부 각부 부장의 출석답변 요구권
- 7) 동연집행부 각부 부장 및 차장에 대한 해임의결권
- 8) 동연회장 및 부회장 탄핵소추권
- 9) 본회의 재정에 대한 감사권
- 10) 본회의 특별기구 설치권
- 11) 회장 궐위시 보궐선거에 대한 결정권
- 12) 분과의 신설 통폐합 및 조정권
- 13) 동아리 등록 취소에 대한 심의 . 의결권
- 14) 신규 동아리에 대한 심의 . 확정권
- 15) 총회소집요구권
- 16) 정인준 동아리로의 승격에 관한 인준
- 17) 중앙동아리로의 승격에 관한 인준
- 18) 기타 총회와 대표자회의로부터 업무를 수행하며 위 사항에 대해 의장은 총회에 보고하며 공고할 의무를 갖는다.
- 19) 동연회장과 부회장이 궐위되어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 동연회장 권한 대행을 발의한다.
- **20) 동아리연합회총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 및 사항의 심의** . **의결** . 확정 제19조(공결)
  - 1) 공결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 2) 구성원이 정당하고 증명 가능한 사유로 결석을 사전 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공결로 처리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결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① 직계존속 및 친 · 인척(6촌 이내)의 경조사
    - ② 국가비상사태,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천재지변 등의 사태
    - ③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
    - ④ 정부 또는 정부에 정식 등록된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시험
    - ⑤ 동아리의 연간 행사 중 가장 크고 중요한 일정이 대표자회의 일시와 중복될 때
    - ⑥ 기타 의장이 인정한 경우
  - 3) 동조 2항의 사전 통보라 함은 대표자회의 소집일 기준 전일 18시까지를 말하며, 당일통보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긴급하거나 불가항력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8.3.8. 개정)
  - 4) 모든 사항의 공결처리를 위해서는 불참사유서(서식#1)와 위임장(서식#2)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위임인이 없을시 주의1회 부여) (2018.3.8. 개정)

5) 위임장의 수임인 자격은 해당 동아리의 회원에 한정 한다. 단, 동조 2항 5호의 경우의 결권을 예외로 두며, 의결권을 얻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출석해야 한다.

6) 대표자회의 이후 5일 이내로 본 회의 장은 집행부회의를 통하여 그 정당성(결석사유에 대한 적정성, 구비서류의 타당성)을 심의한다.

## 제04장 동아리연합회 구성 간부

#### 제20조(회장)

- 1) 지위 및 역할
  - ① 동아리 연합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본회 내 소속 회원들을 관리할 책임과 권리를 진다.
  - ② 동연회장은 본회의 활동 및 회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심의(중앙 운영 위원회) 하는 학교 당국의 회의에 동연 대표로서 참석한다.
  - ③ 동아리의 모든 자율적 행사를 주관한다.
- 2) 임기
  - ①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2017.3.7. 개정)
- 3) 업무 및 권한
  - ① 집행부의 각 국장을 임명하고 해임한다. (2018.3.8. 개정)
  - ② 동연 총회, 대표자회의, 분과위원회, 집행부회의, 분과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며 이를 주관한다. (2016.3.17. 개정)
  - ③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
  - ④ 집행부의 심의를 거친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기획과 결산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 받는다. (2016.3.17. 개정)
  - ⑤ 대외적 활동에 있어 대표권을 갖는다.
  - ⑥ 본회의 회칙개정 발의권과 공표권을 갖는다.
  - ① 본회의 전회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표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기구를 둘수 있다. 단, 임무완료시 대표자회의를 거쳐 해제한다.
  - ⑧ 징계(제명) 발의권을 갖는다.
  - ⑨ 예산 집행 승인권을 갖는다.
  - ⑩ 기타 중요한 안건에 대한 발의권을 갖는다.

#### 제21조 (부회장)

- 1) 지위 및 권한
  - ① 동연의 제반사업에 대한 정책생산 및 집행부서를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 ② 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을 승계한다. 궐위 이외의 사유로 회장이 그 권한 행사를 못 할 때에는 부회장이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 제22조 (집행부서)

- 1) 지위
  - .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 2) 구성
  - . 집행부는 동연회장 및 부회장과 각국 부장으로 한다. (2017.3.7. 개정)
- 3) 업무 및 권한
  - . 총회, 대표자회의 및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 . 본회의 사업 계획안 및 예산편성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과위원회에 제출한다.
  - . 집행부는 제반업무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필요한 경우 회장이 부 서를 조정할 수 있다.
  - 기획국: 제반 사업기획 및 조정
  - 사무국: 제반 사업의 회계 및 사무관리
  - 집행국: 제반 사업의 집행 및 진행 담당
  - 문화국: 문화 선전 활동 담당
  - 홍보국: 제반 선전 . 홍보활동, 본회의 자료제작 및 자료발간 업무
  - 소통국: 본회의 회원, 건의, 애로사항을 담당
  - . 각 국장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 적당수의 부원을 둘 수 있다. (2016.3.17. 개정)

# 제05장 분과

#### 제23조 (구성)

- 1) 각분과 소속 동아리 대표자로 구성한다.
- 2) 본회 산하에 학술, 공연, 체육, 문화, 봉사, 종교 6개의 분과를 둔다.(단, 분과 추가 및 페합은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 된다.) (2016.3.17. 개정)

#### 제 24조(분과장)

1) 분과장은 각 분과 개별 동아리의 대표자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한다.(단, 공석으로 둘 수 있다.) (2017.3.7. 개정)

#### 제 25조(업무 및 권한)

- 1) 분과는 본 회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회칙과 조직을 가진다.
- 2) 분과장은 소속분과 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 3) 해당 분과 동아리 징계에 관한 심의 발의권을 갖는다.
- 4) 분과장으로서 일반적인 업무를 진행한다.
- 5) 분과의 운영, 소집, 의결은 분과자체의 회칙에 준한다.
- 6) 분과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 (2016.3.17. 개정)

#### 제26조 (임기)

1) 분과장의 임기는 매학기 시작 전 종강부터 다음 학기 종강 때까지 이며, 자격조건이 되

면 연임도 가능하다.

# 제 06장 분과 위원회

#### 제27조(지위)

1) 분과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기구이다. (2016.3.17. 개정)

제28조(권한 및 책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

- 1. 본 회 운영위원
- 2. 본 회 주요 사업에 의안 상정
- 3. 예산 및 결산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의안에 관한 사항
- 5.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 6. 기타 의안 상정
- 7. 동아리인의 안정적 활동 보장
- 8. 자신이 소속된 단위의 목적 실현보다는 본 회칙 '제 02조(목적)' 제 08조 (사업)를 위한 성실한 직무 수행 (2016.3.17. 개정)

#### 제29조(구성)

1)본 회의 회장단, 각 분과위원장들로 구성된다.

2)사안이 본회 운영과 사업 진행일 경우 회장단과 집행부**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 다.**(2017.3.7. 개정)

#### 제30조(의장)

- 1)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본 회 회장이 맡는다. 단, 회장 궐위 시에는 부회장이 맡는다.
- 2) 전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2018.3.8. 개정)

#### 제31조(소집)

1) 분과위원회는 대표자회의의 소집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소집하도록 한다. 단, 임시회에 한해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6.3.17. 개정)

# 제07장 재정

#### 제32조 (수입)

- 1) 본회의 재정은 동연예산 및 교비보조로 한다.
- 2) 동아리연합회 차원의 행사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본회의 수입으로 한다.
- 3) 각 사회단체의 동아리 전체에 대한 기부는 본회의 수입이 된다.

#### 제33조 (회계년도)

1)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7.3.7. 개정)

#### 제34조 (회비)

1) 본회의 등록회비는 대표자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한다.

#### 제35조 (예산 편성 및 심의)

- 1) 정해진 기간 내에 각 동아리는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동아리에 대해서는 예산지급이 없다
- 2) 예산은 본회의 집행부와 각 동아리, 분과가 사업계획으로 편성한 것을 **동연총회에 상정하여 심의 및 확정한다.** (2017.3.7. 개정)
- 3) 각 동아리와 특별기구는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5일 이내에 대표자회의에 제출하여 대표자회의는 이를 심의하여 총회에서 확정한다.

#### 제36조 (준예산 및 경정예산)

- 1) 예산안 확정 이전에 예산집행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단, 사후에 대표자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예산수립의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대표자회의에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 제37조 (예산집행)

1) 예산집행은 예산안에 부합되게 편성하여 각 행사 종료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하여야 한다.

#### 제38조 (결산)

- 1) 대표자회의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2) 대표자회의는 결산보고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39조 (이월)

1) 매 회계 기간 흑자분은 다음 회계 기간의 예산으로 이월한다.

#### 제40조 (감사)

1) 대표자회의는 본회의 모든 재정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 제41조 (회계)

1) 본회의 모든 회계업무는 사무국으로 한다.

### 제08장 등록

#### 제42조 (등록요건) (2016.3.17. 개정)

- 1) 30인이상 서명한 회원 명단이 있어야 한다. 단, 회원은 3개 단대이상 소속되어야 한다.
- 2) 본회의 회칙을 인정하고 그에 따를 것을 서약해야 한다.
- 3) 대학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 4) 활동 포트폴리오 및 다음 학기 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6.3.17. 개정)
- 5) 중앙동아리에서 30인 이상이 서명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규 등록에 제한 한다.)
- 6) 신규 가인준 등록 신청은 매 학기 초에 받으며 1년 동안의 활동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집행부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자회의의 과반수 찬성으로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정인준 동아리로의 승격) (2016.3.17. 개정)
- 7) 제 42조 1항에 대해서 특정 단과대 및 학번의 구성이 50%미만이어야 한다.
- 8) 동아리의 회칙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43조 (등록기간)

1) 매년 3월에 등록한다.

#### 제44조 (등록취소)

- 1) 재등록하지 않는 동아리
- 2) 징계결정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동아리

#### 제45조 (재등록)

- 1) 제42조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동아리는 만 3년동안 모든 자격이 상실된 다. (2016.3.17. 개정)
- 2) 재등록시 등록요건은 제 42조의절차에 따른다.

#### 제46조(가인준 동아리 등록 조건)

- 1) 가인준을 위해서는 본회의 가인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가인준 등록 서류 양식은 제 42조에 따른다.
- 3) 가인준 등록 서류는 본회에 기록 및 자료를 남겨놓는다.

#### 제47조(가인준 동아리 활동 및 검증)

- 1) 가인준 동아리는 본회 회칙을 준수한다.
- 2) 가인준 등록 이후 본회에 매년 각 학기마다 활동을 검증 받는다.
- 3) 가인준 동아리는 1년동안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동아리지원금은 주어지지 않는다.
- 4) 1년후 정인준 동아리로의 승격 조건이 주어진다.

#### 제48조(정인준 동아리로의 승격)

1) 정인준 동아리는 본회에 재등록 서류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3월 총회에서 승격안에 상정될 수 있다.

- 2) 분과위원회에서는 가인준 동아리 모두를 대상으로 승격을 심사하되, 그 자격은 제 42 조 (가인준 동아리 등록 조건)에 의거한다. (2016.3.17. 개정)
- 3) 승격 과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으며, 동연 총회를 통해서만 의결 될 수 있다.
  - 1. 재등록 서류 검토 후 승격 후보 동아리 선정
  - 2. 구비서류 요건 검토
  - 3. 3월 총회에 인준안 상정
  - 5.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는 질의응답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 6. 대표자 2/3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시 가결된다.

#### 제49조(정인준 동아리의 활동 및 검증)

- 1) 정인준 동아리는 본회 회칙을 준수한다.
- 2) 정인준 승격 이후 본회와 학생지원처에 매년 각 학기마다 활동을 검증 받는다.
- 3) 정인준 동아리는 1년동안 선거권, 피선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단, 대표자회의 의 결권은 주어진다.)
- 4) 1년후 중앙동아리로의 승격 조건이 주어진다.

#### 제50조(중앙동아리로의 승격)

- 1) 본회와 학생지원처에서 정인준 동아리 모두를 대상으로 승격을 심사하되, 그 자격은 제 42 조 (가인준 동아리 등록 조건)에 의거한다.
- 2) 승격 과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 1. 재등록 서류 검토 후 승격 후보 동아리 선정
  - 2. 구비서류 요건 검토
  - 3. 3월 총회전 학생 지원처의 승인후 중앙동아리 등록되고 총회때 이를 공고한다.

#### 제51조(중앙동아리)

- 1) 본회는 승격 절차를 통해 중앙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를 보장한다.
- 2) 보장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 지원금
  - 2. 자치공간에 대하여 보장
  - 3. 본회에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보장
  - 4. 본 회칙과 심사세칙을 준수하는 이상, 그 지위를 보장
- 3) 제 51조 2항 2호에 대해선 본회와 학생 지원처에서 공간 확보후 순차적으로 제공 한다. (2016.3.17. 개정)

# 제09장 징계

#### 제52조 (징계)

- 1) 동아리나 동연의 목적과 집행에 위배된 행위를 한 동아리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 2) 경고 및 주의의 징계 효력기간은 1년(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간 지속한다. (단, 방중에 징계를 받을시에는 그 다음 학기에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3)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 4) 동아리연합회는 "주의" 및 "경고" 세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징계사유(동아리 내 성폭력, 폭력 등)가 발생하였을 시 집행부 회의의 의결에 따라 경중을 판단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2017.3.7. 개정)

#### 제53조(징계유형)

#### 1) 경고

- (1) 대표자 회의 2회 이상 불참할 경우(단, 3회 이상 불참시 주의 없이 경고) (불참사유서 및 위임장을 의장의 개회선언 전까지 서면 제출한 경우 참석)
- (2) 동아리간 마찰을 빚어서 타 동아리 또는 동아리 소속 인원에 대해 피해가 갈 경우 (문제의 경중에 따라 동연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 (3) 동연에서 의결하여 단체로 진행하는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단, 동연은 최소 5일 전에 공지한다) (축제, 동캠, 가두모집, 선거 등)
- (4) 선거에 동아리인원 50%이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 (5) 동아리 활동이 부진함에도 타개의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동연에서 결정)
- (6) 활동내역서는 학기 중 2회 방중 1회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미제출할 경우
- (7) 회칙에 명시된 본 회의 목적 및 동아리 활동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로 동아리 또는 동아리연합 회의 위상을 격하시켰을 경우 (외부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물품 유기 및 방치, 물품 파손, 도박 등)
- (8) 연습실과 휴게실 사용중 피해를 준 동아리의 경우 (문제의 경중에 따라 동연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 2) 주의

- (1) 대표자 회의 1회 불참할 경우 (대리인 가능, 의장의 개회선언 전까지 서면 제출)
- (2) 동아리간 마찰을 빚어서 타 동아리 또는 동아리 소속 인원에 대해 피해가 갈 경우 (문제의 경중에 따라 동연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 (3) 해당 학기에 진행하는 동아리연합회 주관 및 주최 행사 활동에 최소 1회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총회, 각종행사등)
- (4) 정당한 사유와 사전통보 없이 동아리연합회 주관 및 주최 활동에 지각한 경우 (정 당한 사유는 동아리연합회에서 결정한다.)
- (4) 동연에서 의결하여 단체로 진행하는 행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늦어서 한 동아리로 인해 전체가 피해 볼 경우 (축제, 동캠, 가두모집, 선거 등)
- (5)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회의 도중에 부득이한 사유서를 제출하고 회의를 나가는 경우
- (6) 연습실과 휴게실 사용중 피해를 준 동아리의 경우 (문제의 경중에 따라 동연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 3) 제명

(1) 종교분과가 아닌 타 분과 동아리가 포교활동을 하는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 (단, 이는 종교 모임의 타 분과 위장 등록 및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017.3.7. 개정)

#### 제54조**(임의 제명)**

- 1) 본 회 또는 본 회를 구성하는 동아리 및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본 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대표자회의의 심의 의결을 통하여 임의 제명 처리할 수있다. (2018.3.8. 개정)
- 2) 동아리가 활동을 중단했을 때 해당 동아리의 회장이 동아리회원의 임의 제명 동의를 받고 요청이 있을 경우 의결없이 임의 제명할 수 있다.
- 3) 특히 동아리 및 동아리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될 경우 (도박이나 성폭행, 폭력 등의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그 즉시 진상을 파악 한 후 대표자회의를 통해 관련 사실을 보고하고 의결한다.
- 4) 54조 3항의 임의 제명에 대한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동아리연합회 장은 심사 대상 동아리에게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 (2) 본 회칙 제52조에 의거하여 심사하며, 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 (3) 동아리연합회 장은 대표자회의를 열어 의결 과정을 진행한다. (단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는 질의응답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 (4) 임의 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의결 과정은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투표한 대표자의 소속 동아리를 기 재하지 않는 무기명 투표에 의하며, 그 결과는 즉시 공고된다.
  - (6) 제명이 가결이 되었을 경우 그 후의 절차는 55조의 4항을 따른다.
  - (7) 제명이 부결이 되었을 경우 전체경고가 삭제되지 않고, 경고 2회 주의1회인 상태를 효력기간동안 유지한다. (2017.3.7. 개정)

#### 제 55조(절차 및 효력)

#### 1) 절차

- (1) 징계를 받을 경우 동아리연합회에서 징계내용에 대해 통보한다.
- (2) 제명결정을 할 때에는 제명결정을 위한 동아리연합회 집행부 회의 7일 전 해당동 아리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동아리가 동아리연합회 집행부 회의에서 충분한 입장을 표명할 시간을 주어야한다. 충분한 입장표명은 동연장이 판단하고 동아리연합 회는 제명결정에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8.3.8. 개정)
- 2) 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55조 2항에 준하여 제명 결정된 동아리의 제명에 대한 이의신청시에는 전체동아 리대표 1/2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부당함의 입증책임은 부당함을 주장 하는 동아리에 있다.
  - (2) 대표자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명에 대한 이의에 대해 동아리연합회의 장은 심사 대상 동아리에게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 (3) 본 회칙 제52조에 의거하여 심사하며, 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 (4) 동아리연합회 장은 대표자회의를 열어 의결 과정을 진행한다. (단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는 질의응답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 (5) 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대표자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 의결 과정은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투표한 대표자의 소속 동아리를 기 재하지 않는 무기명 투표에 의하며, 그 결과는 즉시 공고된다.
- (7) 이의신청이 부결이 되었을 경우 그 후의 절차는 55조의 4항을 따른다. (제명시)
- (8) 이의신청이 가결이 되었을 경우 전체경고가 삭제되지 않고, 경고 2회 주의1회인 상태를 효력기간동안 유지한다.

#### 3) 징계에 대한 이의의 신청

- (1) 징계를 받은 동아리는 징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징계 통보 후 48시간 이 내에 동아리연합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이의서가 접수된 때에는 동아리연합회는 24시간 이내에 동아리연합회 집행부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재심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 인에게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018.3.8. 개정)

#### 4) 효력

- (1) 경고 2회, 주의 1회일 시 지원금 자격을 박탈한다.
- (2) 지원금 자격 박탈 이후 추가로 주의, 경고를 받을 시(경고3회 이상일 경우) 의결 없이 제명한다.
- (3) 제명 공고와 동시에 해당 동아리 등록취소이며, 해당 동아리 이름으로 활동 금지하고, 공간 및 지원금을 박탈한다. (제명 처리된 동아리는 '중앙동아리'라는 명칭을 사용 할 수 없다.)
- (4) 54조 2항 3호에 대한 공간은 제명 공고 후 7일 이내 동아리방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학교에서 강제 진행 될 수 있다.
- (5) 54조 2항 3호에 대한 지원금 중단 기간은 결정된 후 1년으로 한다. (2017.3.7. 개정)

# 제10장 선거

#### 제56조 (선거)

1)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한다.

#### 제57조 (선거권)

- 1) 본회에 소속된 모든 동아리인 으로 한다. 단, 동아리 대표자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 2) 분과장의 경우에는 분과회의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구성한다.

#### 제58조 (피선거권의 가격요건)

- 1) 동연회장 및 부회장
- ·선거는 임기개시 전년 11월 중에 한다.

- ·회장은 선거일로부터 30일전까지 차기 동연회장 선거일을 결정·공고 한다.
- ·후보자는 선거개시 2주일 전에 선관위에 등록, 등록양식은 선관위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유세는 2회로 하되 자율적인 선거운동은 인정한다.
- ·당선은 재적투표자 과반수의 투표와 총투표자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시 에는 1회에 한하여 재투표를 하고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단독후보시 찬반투표로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된다.

#### 제59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 1) 투표율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만일 때, 또는 과반수 이상의 투표가 없을 때 다득표한 2개조를 대상으로 일주일 이내에 재선거한다.
- 2) 회장·부회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잔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0일이내에 보궐선거 를 실시한다.
- 3) 각 동아리회장의 재선거 및 보궐 선거는 각 기구의 회칙에 의거한다.

#### 제60조 (입후보 및 당선)

- 1) 동연회장 및 부회장은 공동입후보하여 선거권을 가진 선거자 과반수 이상의 직접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2) 동연회장 및 동아리 대표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동연 선거회칙 및 각 단위자체 회 칙에 의거 한다.

#### 제61조 (임기)

- 1) 동연회장 및 부회장
-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제62조 (선거관리위원회)

- 1) 구성-선관위 위원의 구성은 현직 본회의 회장 및 부회장 집행부(집행부는 선관위내에 서의 실무를 담당하며 발언권 및 결정권에 있어서의 제약이 있다.) 및 대표자회의에서 분과구분 기준으로 구성된 6인으로 구성된다. 단 선관위원이 출마할시 선관위 자격은 박탈된다.(이때 새로운 선관위 구성은 동아리의 연혁 및 구성원 비율에 따른 우선순위로 결정한다.)
- 2) 구성시기 선거일로부터 20일전에 대표자회의에서 **동아리연합회** 선관위 소집을 공고한다. (2017.3.7. 개정)
- 3) 업무 및 권한
  -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주관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
    - -선거인 명부 작성
    - -선거 홍보용 유인물 및 벽보 작성
    - -선거운동의 방법과 일시의 조정
    - -선거장의 질서 유지 및 감독
    - -선거 및 당선의 유효 여부와 당선자의 결정
    - -재선거 여부 결정

- -선거일정 공고
- -기타 선거에 관련된 재반업무

## 제11장 비상대책위원회

#### 제63조 (지위)

1)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총동아리연합회 회장과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 모두 유고상황인 경우에 본회의 행정 공백을 두지 않기 위하여 전대(前代) 회장단 및 집행부를 승계한다.

#### 제64조 (구성)

- 1) 비대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구성된다.
  - (1)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선거가 무산될 때
  - (2) 총동아리연합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할 때
  - (3)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이 모두 탄핵될 때
- 2) 1)에 따라 비대위가 구성이 결정되면 해당 회기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이 되며, (1)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이 비상대책 위원장으로, (2)과 (3)은 사퇴가 보고된 운영 위원회나 탄핵이 의결된 대표자회의에서 과반의의결로 비상대책 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장은 다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3) 비상대책위원들은 그 위원 중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다. 단, 비대위에서 비상대책 위원회 부위원장이 필요하고 판단될 시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 4) 비대위의 구성이 확정될 경우, 비대위는 7일 내에 비상대책위원과 위원장을 공고한다.

#### 제65조 (권한과 의무)

- 1) 비대위는 운영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선출된 비대위원장은 본회의 장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 2) 비대위는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 3) 비대위는 총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다.
- 4) 비대위는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시 집행부서를 구성하고, 임시 집행부서의 국 장을 임명할 수 있다. 임시 집행부서의 인준은 비대위에서 의결한다.

#### 제66조 (임기)

- 1) 당해 회장단의 임기가 만료된 후부터 시작한다.
- 2) 후대 회장단이 선출되고 난 뒤 해산한다.

### 제12장 회칙개정

#### 제67조 (발의)

- 1) 대표자회의의 동의를 얻어 동연회장이 발의한다.
- 2) 대표자회의에서 발의 할 수 있다.
- 3) 동아리인 100인 이상의 청원으로 발의할 수 있다.

#### 제68조 (절차)

- 1) 회칙개정이 발의되면 동연회장은 이를 즉시 보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동연총회를 얻어 의결한다.
- 2) 의결은 10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 칙

#### 제01조 (회칙발의)

- 1) 본회의 회칙은 대표자회의의 심의를 거쳐 동연총회에서 확정하고 회장이 공표한 날로 부터 시작된다.
- 2) 공표는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공표한다.

제02조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규약

#### 제01조 (예산편성 절차)

매학기초 각분과, 동아리 사업계획서 접수 -> 동연 집행부에서 예산안 편성-> 대표자회의에서 심의 -> 총회에서 확정 집행(2016.3.17. 개정)

#### 제02조 (집행의 원칙)

집행의 근거는 사업계획서의 전학기 활동평가에 의한다. 접수 기간을 넘긴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산지급이 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예비비에서 지급한다.

- ·집행된 예산은 사후 보고서를 통해서 반드시 공개한다.
- ·동아리 자체내 행사(정기행사 및 창립행사)는 지급하지 않는다.
- ·행사를 하는 동아리에 한하여 지급한다.
- ·행사 규모에 비례책정 한다.
- ·대외적 민중의 어려운 삶을 도우며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활동에는 찬조금 형태로 지 원하다.
- ·예산안 의결 이전에 부득이하게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또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경우는 전 학기 예산집행에 준한다.
- ·개별 동아리가 예산을 지급받고 행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산을 회수한다. 회수 되지 않았을 시 제명한다.

#### 학생회관 사용에 대한 규약

#### 제01조 (사용수칙)

- 1) 학생회관의 각종 부대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고 타인의 것이 아닌 바로 우리 동아리인 의 것이라는 의식 속에 아껴 사용한다.
- 2) 기타 기물의 파손에 주의하며 학생회관의 정숙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3) 각 동아리 대표자는 주기적으로 1항 및 2항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 · 홍보한다.
- 4) 매 학기 초 각 동아리의 시설상태 및 집기 보유현황을 동연에 파악 · 보고한다.

#### 제02조 (징계)

학생회관 사용에 있어서 기물파손 또는 지역주민에 대한 물의를 **빚은** 동아리 인이 발생하는 상황 등 타동아리에 피해를 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해당 동아리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 단, 모든 징계조치는 제09장의 절차를 준수하며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에 불응하는 동아리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2017.3.7. 개정)

- 1) 1차 경고
  - ·해당 동아리대표자의 서면 공개사과 및 동연회장의 해당 동아리에 대한 문건 경고
- 2) 2차 경고
  - ·해당 동아리에 대한 다음 학기 일체의 지원금 규제
- 3) 2차 경고, 1차주의 이상 (제명) (2015.03.20. 개정) ·동아리 등록취소, 동아리 이름으로 활동 금지, 공간박탈
- 4) 1항 및 2항은 대표자회의의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1/2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며, 3항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 \*별첨\*

2012년 3월 29일 회칙개정

- -분과장제도/분과회의/분과장회의 신설
- -활동내역서 일년에 한번에서 한달에 한번으로 변경
- -경고5회시 의결없이 제명에서 경고3회시 의결없이 제명으로 변경
- -기타 징계내용 수정 및 변경

2014년 3월 27일 회칙개정

회칙 추가 및 개편

임기 개편 및 수정

주의조치 추가

징계조치 추가

공결 추가

개회, 폐회 출결 변경 제명 시 조항 추가 가,정,중앙 동아리 등록, 효력, 승격 표기 활동 내역서 한달에 한번에서 방중1회 학기중 매월 1회로 변경 심사안 개편 공포 수정 분과장제도 개편

2015년 3월 20일 회칙개정

- -민원국을 소통국으로 변경.
- -활동내역서 기간을 학기중 매월 1회에서 학기중 2회로 변경. (단, 활동 내역서 내용은 한 달 단위로 제출)
- -경고는 매년 초에 초기화에서 매학기 시작에 초기화로 변경.
- -주의는 매년 초에 초기화에서 매학기 시작에 초기화로 변경.
- -경고 3회시 제명에서 경고 2회 주의 1회시 제명으로 변경.
- -동아리연합회를 총동아리연합회로 변경.

#### 2016년 3월 17일 회칙개정

- 문맥순화 내용추가
- 문맥순화 용어변경
- 대표자 회의의 정기회의는 학기중 매월 1회씩으로 변경
- 대표자회의 재적 1/2 이상의 동의로 변경
- 불참사유서와 위임장은 수임인이 대표자회의 당일 회의장에서 개회선언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 제출하도록 변경
- 임기는 매년 2학기 종강 일을 기준으로 다음 년도 2학기 종강 일까지 1년으로 변경
- 운영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변경
- 민원국을 소통국으로 변경
- 퍠합을 페합으로 변경
- 등록조건에 활동 포트폴리오 및 다음 학기 활동계획서를 첨부할 것으로 변경
- 취소된 동아리는 만 3년동안 동일한 동아리명으로 등록이 불가하다로 변경
- 주의, 경고는 2학기 종강일에 초기화 된다로 변경
- 경고 3회, 주의 1회일 시 지원금 박탈 한다. 지원금 자격 박탈 이후 추가로 주의, 경고를 받을시 의결 없이 제명한다로 내용추가

#### 2017년 3월 7일 회칙개정

- 회원자격에서 가인준, 정인준으로 구체화
- 동아리대표자회의 지위 및 구성 사항에서 4항으로 잘못 지정되어 있는 것을 3항으로 수정
- 동아리 연합회 임기 및 재정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
- 부장을 국장으로 변경

-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과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공개로 변경
- 분과장을 공석으로 둘 수 있다는 항목 추가
- 본 회칙에 없던 운영위원회를 제외
- 징계 항목 구체화(경고, 주의, 제명) 및 항목 세분화
- 징계 임의제명 항목 추가
- 징계에서 55조가 추가됨으로써 이후 항목의 조항 추가
- 선거관리위원회 소집에서 단대에서 동아리연합회로 수정

#### 2019년 4월 11일 회칙개정

- 비상대책위원회 추가

# 불참 사유서(제출용)

동아리명		성 명	
학 번		연 락 처	
사 유			
증빙서류	유 / 무	증빙서류 내용	

20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불참 사유서(보관용)

동아리명		성 명	
학 번		연 락 처	
사 유			
증빙서류	유 / 무	증빙서류 내용	

20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위 임 장

위임인

동아리명: 학 번:

성 명: 연락처:

대리인

동아리명 :학 번 :성 명 :연 락 처 :

상기 위임인은 대리인에게 아래의 사항을 위임합니다.

- 위 임 사 항 -

- 1. 회의 출석과 이에 부수되는 모든 행위 일체.(발언권 및 투표권)
- 2. 회의에서 결정되는 제반 사항에 대한 결정권 및 참여권. 끝.
- \* 상기 위임인은 위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위임으로 수반되는 제반 사항을 충실히 이행 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인** (서명 또는 인)